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504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박범계・강준현・김승원
이광희・박지원・문정복
박정현・이성윤・강득구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・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9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고,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시정방안 준수 요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피심인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행위”라 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4조의2(시정방안 준수 요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피심인"이라 한다)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"해당 행위"라 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.

	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제24조의2(동의의결) (생 략)	제24조의3(동의의결) (현행 제24조의2와 같음)
제24조의3(이행강제금) (생 략)	제24조의4(이행강제금) (현행 제24조의3과 같음)